

제 안 설 명 서

[구 「영주교육청」 건물 및 부지 매입(안)]

행정지원국
회 계 과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 |
|----------|-----|
| 의안 번호 | 123 |
|----------|-----|

제출년월일 : 2004. 6 .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1. 제안 이유

우리시가 2004년도에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 내용

< 구 「영주교육청」 건물 및 부지 매입 >

○ 매입대상 재산현황

- 건 물 : 1건(1동), 면적 1,457.5m²(440.89평)
- 토 지 : 1건(1필지), 대지, 면적 1,815m²(549평)

○ 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액 : 1,425,118천원

- 공시지가(토지) : 1,157,970천원
- 과세표준액(건물) : 267,148천원

○ 위 치 : 영주시 영주1동 22-3번지

○ 소 유 자 : 경상북도(교육감)

○ 시설규모

• 구조 및 층수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층 수 : 지하 1층, 지상3층 (옥탑 4층이 있음)

- 용 도
 - 지하1층 81m'(대피소), 지상1~3층 1,287.5m'(사무실), 옥탑4층 89m'
- 사업비 : 1,700,000천원
 - 토 지 : 1,300,000천원
 - 건 물 : 400,000천원
- 추진기간 : 2004. 6 ~ 2005. 12
- 취득목적
 - 시의회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구 영주교육청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여 공용청사 및 부지로 활용코자 함.
- 취득사유
 - 현 영주시의회 진입로변에 위치한 구 교육청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향후 시민들의 행정수요 욕구에 부응하고 시의회 부지와 합하여 공용청사 및 부지로 활용 시민들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재산확보 가치증대와 관리에 효율성이 높음.
 - 경상북도교육청에서 2004. 5.18일자로 매각승인되어 영주교육청으로부터 조기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이 있음.
- 매입 필요성
 - 향후 주민들의 행정편의 욕구 증가에 대비하고 공용청사로 활용키 위하여 매입이 필요하며 시의회와 인접하고 있어 시의회 청사와 합하여 이용이 가능하고 시민들에게 공익성 기여와 재산 관리의 효율성이 높음.
 - 영주교육청으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에 있으나 사용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장래 교육청이 필요시 반납계약 조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계속 사용에는 한계가 있어 매입이 필요함.

○ **재원 확보**

- 구교육청 청사부지와 건물을 매입시 17억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므로 2004년도 추경시 계약금을 확보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도 본예산에 재원을 확보 매입을 추진하겠음.

3.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 : 붙임참조

- ①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총괄표)
- ② 2004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4. 관련법규

- ①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②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③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관 련 법 규

□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분석하여야 한다.

④ <삭 제 99·1·21>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상)

③ ~ ⑤ <생략>

□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 ③ <삭제 '95. 11. 18>

④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 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림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 분 | 기 승 인 | | | 금 회 승 인 신 청 | | | 합 계 | | | 비 고 | |
|---------------|---------------|-------|--------|----------|-------------|-------|---------|-----------|--------|----------|-----------|--|
| | | 건 수 | 수 량 | 금 액 | 건 수 | 수 량 | 금 액 | 건 수 | 수 량 | 금 액 | | |
| 취 득 | 계 | 토건기 | 11 | 17,444 | 267,868 | 1 | 1,815 | 1,300,000 | 12 | 19,259 | 1,567,868 | |
| | | 지불타 | 3 | 2,663.76 | 2,666,431 | 2 | 1,688.9 | 760,000 | 5 | 1,352.66 | 3,126,431 | |
| | 1. 매입 | 토건기 | 4 | 5,711 | 205,080 | 1 | 1,815 | 1,300,000 | 5 | 7,526 | 1,505,080 | |
| | | 지불타 | 2 | 1,984 | 2,200,000 | 1 | 1,457.5 | 400,000 | 3 | 3,441.5 | 2,600,000 | |
| | 2. 교환요 로취득 | 토건기 | | | | | | | | | | |
| | | 지불타 | | | | | | | | | | |
| | 3. 기타 취득 | 토건기 | 7 | 11,733 | 62,788 | | | | 7 | 11,733 | 62,788 | |
| 지불타 | | 1 | 679.76 | 466,431 | 1 | 231.1 | 360,000 | 2 | 911.16 | 826,431 | | |
| | | | | | 1 | 2 | 100,000 | 1 | 2 | 100,000 | | |
| 처 분 | 계 | 토건기 | | | | | | | | | | |
| | | 지불타 | | | | | | | | | | |
| | 4. 배각 | 토건기 | | | | | | | | | | |
| | | 지불타 | | | | | | | | | | |
| | 5. 양어 | 토건기 | | | | | | | | | | |
| | 지불타 | | | | | | | | | | | |
| 6. 교환요 로처분 | 토건기 | | | | | | | | | | | |
| | 지불타 | | | | | | | | | | | |
| 7. 기타 처분 | 토건기 | | | | | | | | | | | |
| | 지불타 | | | | | | | | | | | |

2004년도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 일련 번호 | 재 산 표 시 | | | 추정가액 | 취득 시기 | 취 득 사 유 | 취득재산 소유자 주 소, 성 명 | 비고 |
|----------|------------|----------------------------------|---------|-----------|-------------------|---------------------|----------------------|-------------|
| | 지목 | 소 재 지 | 수 량 | | | | | |
| 계 | | | | 2,160,000 | | | | |
| 1 | 건물 | 영주시 영주동 22-3번지 | 1,457.5 | 400,000 | 2004 ~ 2005 | 공용청사 및 부지활용 | 경상북도(교육감) | 회계과 |
| 2 | 토지 | 영주시 영주동 22-3번지 | 1,815 | 1,300,000 | 2004 ~ 2005 | 공용청사 및 부지활용 | 경상북도(교육감) | 〃 |
| 3 | 건물 | 영주시 가흥동 3-2번지 | 231.4 | 360,000 | 2004 ~ 2005 | 공용청사 신축 | 영주시장 | 〃 |
| 4 | 선비상 조형물 | 영주시 풍기읍 풍기 I.C 영주시 순흥면 선비촌 입구 | 1 1 | 100,000 | 2004 하반기 | 우리시가 선비의 고장임을 홍보 | 영주시장 | 문 화 관 광과 |

구 「영주교육청」 위치도

○ 영주시 영주1동 22-3번지(1,815m²). 건물 1동 1,457.5m²

